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주 의 요 구

제 목 전문공사를 종합공사로 분류 후 수의계약 체결 등 부적정

기 관 명 광주광역시

내 용

광주광역시(회계과)에서는 아래 [표]와 같이 ‘○○○교육관 주변 정비공사’ 등 3건의 공사를 종합공사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.

[표] 종합공사 수의계약 현황

사업명	계약일자	계약금액 (천원)	계약방법	계약상대자	주요공종 (분포율)	직접시공 여부
합 계	3건	487,977				
○○○교육관 주변 정비공사	‘16. 5. 3.	119,366	2인수의견적	○ ○ 건 설 (주) ○○○	포장공사 (94%)	하도급
○○○○도로 신창IC 진출 입로 확장공사	‘16. 2. 17.	196,383	2인수의견적	(주)○○건설 ○○○	철근콘크리트 (66%)	하도급
○○○○병원 옛터정비공사	‘17. 2. 6.	172,228	2인수의견적	(주)○○종합 조경 ○○○	조경식재 (64%)	직접시공

※ 광주광역시 ○○과 제출자료 재구성

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제25조제1항제5호가목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건설공사(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)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,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.

또한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16조의 규정에 따르면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하며,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에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.

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르면 부대공사의 범위는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,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로 규정되어 있다.

따라서 계약담당자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약 전 기초금액 산출서의 공정 내역을 확인하여 계약법령 등에 따라 종합공사업 또는 전문공사업으로 분류하여 계약을 추진하여야 한다.

그러나 위 관서에서는 ‘○○○교육관 주변 정비공사’의 경우 전체공정 중 93%가 포장공사이며, 이외 약 7%는 토공 및 교통안전시설공 등의 부대공정으로 구성된 전문공사로서 법령에 따라 추정공사비가 1억원 이상이므로 일반경쟁입찰(적격심사방식)을 하여야함에도, 위 [표]와 같이 3건의 공사에 대해 내역서상 각 각의 공정을 주된 공정으로 판단하여 추정공사비 2억원 이하로 종합공사(토목공사)로 하여 부적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.

이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여 낙찰예정자에 대해 사업 수행능력 평가, 경영상태 평가 및 사업 수행능력 결격여부 확인 등의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하였다.

결국 종합공사업을 하는 계약상대자는 전체 도급금액의 45%이상을 직접시공하지 아니한 채¹⁾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며, 하도급 공정(금액)을 살펴본 바, 부대공 및 사급 자재대를 제외한 주 공정 전체를 하도급으로 공사를 추진함에 따라 공사 품질 저하 및 해당 계약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전문공사업체에 입찰(공사) 참여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.

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장은

[주의] 앞으로 해당 계약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업체에 공사 참여 기회가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1)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8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르면 도급금액 3억원미만의 경우 100분의 50을 직접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, 4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직접 시공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